원격평생교육센터운영규정 8-1-3

규정번호	8-1-3
제정일자	2020.7.27
최근개정	2025.3.31
개정차수	2차 개정
관리부서	원격평생교육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원격평생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)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원격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한 각종 원격교육사업 등 평생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평생교육본부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.(개정 2025.3.31.)

제3조(직무) 센터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본부의 원격교육 시스템 정책수립 및 추진(개정 2025.3.31.)
2. 평생교육본부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, 품질관리 및 지원(개정 2025.3.31.)
3. 평생교육본부의 원격수업 시스템 관리 운영(개정 2025.3.31.)
4.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련 외부기관 연구과제 및 컨설팅 업무 수주와 운영
5. 비학위 과정 및 일반인 대상 원격교육 운영 및 지원
6. 원격교육과 관련 수업료 징수 및 운영 등 회계 업무
7. 기타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활동 지원

제4조(조직) ① 센터는 평생교육본부 산하 센터로 두며 센터의 모든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(개정 2025.3.31.)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) ①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원격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, 추진한다.

③ 위원회는 평생교육본부가 운영하는 원격강좌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, 의결, 추진한다.(개정 2025.3.31.)

④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3. 원격수업 교과목의 유지, 폐기에 관한 심의 사항

4.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제6조(교육과정 및 수강대상) ① 교육과정은 학위과정, 비학위과정, 자격증과정, 기타 등으로 운영한다.

② 수강 대상은 명지전문대학 재학생, 지역주민, 재직자, 일반 성인, 고등학생, 외국인, 기타 교육수요자 등으로 한다.(개정 2025.3.31.)

제6조의2(수료증) ①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(별지 제1호)을 수여하고, 교육과정 중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에게는 나노디그리과정, 마이크로과정 수료증(평생교육원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별지 제1호)을 수여한다. 또한 필요한 경우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 다만, 수료 및 자격기준은 과정별로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별 수료자의 학적사항을 유지·관리한다.

[본조신설 2025.3.31.]

제7조(운영시행규칙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우리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제5항제4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2조, 제3조제1호·제2호·제3호, 제4조제1항, 제5조제2항, 제6조제2항, 제6조의2)

[별지 제1호]

제 - 호

수 료 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우리대학 부속 평생교육본부 과정(학점)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

년 월 일

명지전문대학 부속 평생교육본부장 ㊞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명지전문대학 총장 ㊞